용인시 아동 ·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

제정 2012. 8. 3 조례 제1238호 일부개정 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 일부개정 2017. 10. 2 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 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아동·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- 2. "아동·여성대상 폭력"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,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.
- 3. "피해자"란 아동·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조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2장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·운영

제4조(지역연대의 설치)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용인시 아동·여성안전지역연대(이하 "지역연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다.

제5조(지역연대의 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
- 2.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 한 사항
- 3.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- 4. 지역 내 아동 ·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
- 5.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 한 사항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6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7. 10. 2>
 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·여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·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시의원
 - 2.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 - 3. 아동・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 - 4. 초・중・고등학교.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

- 5. 경찰·사법기관(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)
- 6.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
- 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
 -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- 3. 제1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때
 - 4.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 부진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,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회의)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.
 -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1조(간사)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 사는 아동·여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 - ②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· 보관한다.
- 제12조(실비보상)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·여성보호 시책의 수립·추진 등을 위한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용인시 각

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 12. 11〉

제3장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

- 제13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아동 ·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
 - 2. 아동 ·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3. 아동 ·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 - ② 시장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, 시설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4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·여성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- 제15조(관련정보의 제공) 시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 별표 생략.

부칙〈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- ④ 「용인시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부시장"을 "제1부시장"으로 한다.
- 48 부터 83 까지 생략